

---

#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보고서

---

2026. 2.

# 목 차

## I.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운영 현황

1. 진흥원 소개 .....	1
2. 인권경영 운영 현황 .....	4

##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1. 인권헌장 제정 .....	6
2. 인권경영 거버넌스 .....	9
3. 인권경영 이행계획 .....	10

## III. 인권영향평가

1. 2025년 인권영향평가 개요 .....	12
2. 인권영향평가 지표 .....	14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16
4. 인권영향평가 권고의견 .....	27
5. 중대성 평가 .....	30

## IV. 구제절차

1. 구제절차 개요 .....	36
2.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운영 현황 .....	38

## V. 인권경영 교육

1. 2025년 인권교육 개요 .....	39
2. 2025년 인권교육 실적 .....	41

## VI. 종합평가와 공개 및 소통

1. 종합평가 .....	43
2. 공개 및 소통 .....	45

# I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운영 현황

## 1. 진흥원 소개

### □ 개요

-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함)은 부천시 출연기관이자 공직유관단체로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3년 3월 13일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
- 2019년 4월 9일 부천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 역할

-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수행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

### □ 경영비전

- (미션)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산업 육성
- (비전) 부천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Best 비즈니스 파트너
- (핵심가치) 도약, 소통, 전문성, 경청

### □ 전략목표 및 과제

- 신성장 첨단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제조혁신,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업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ESG 확산을 위한 열린 경영체계 구현을 목표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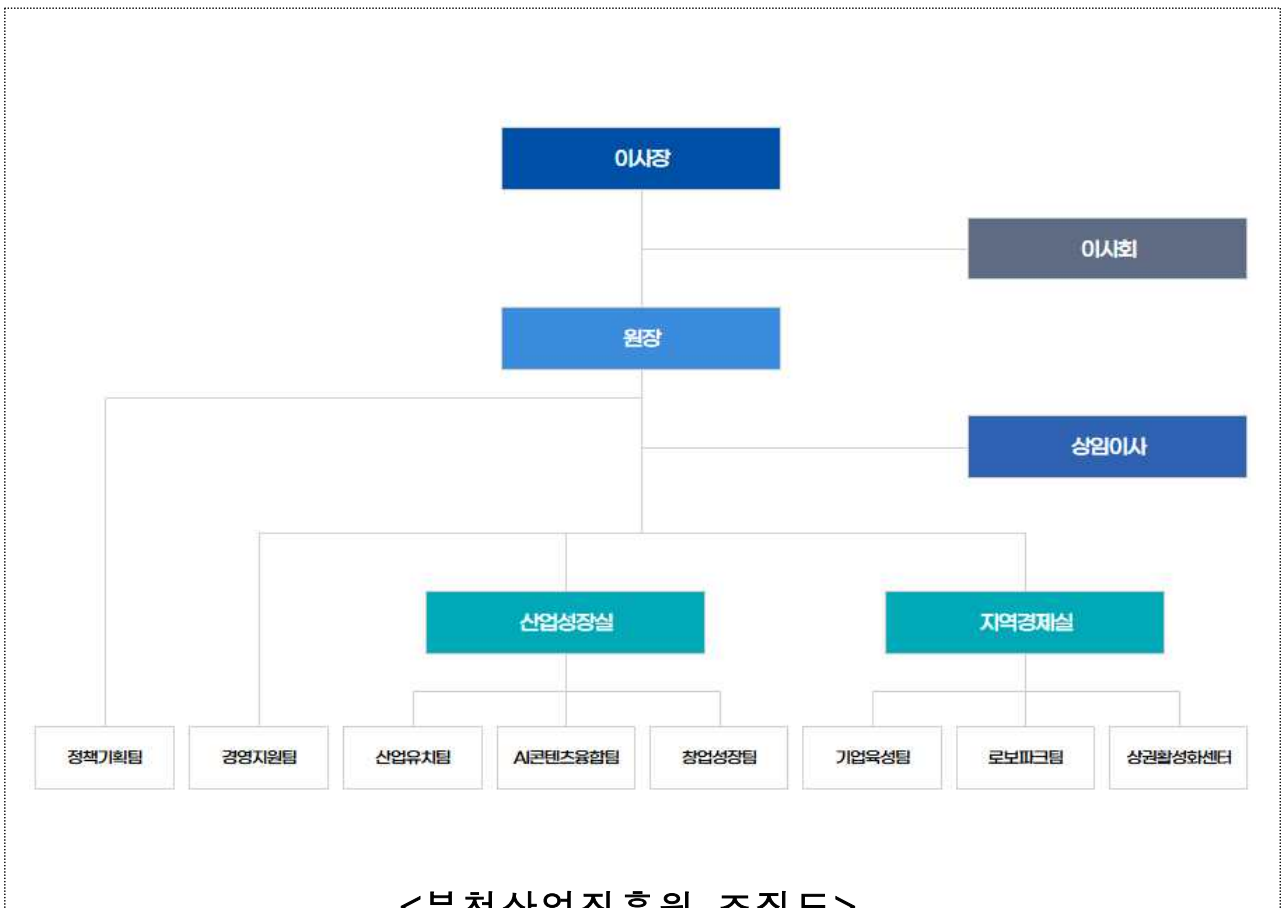
# I.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운영 현황



## □ 조직도

○ 2025년 12월 기준 이사장 및 이사회 산하 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등기임원), 산업성장실과 지역경제실, 경영지원팀, 원장 직속 부서인 정책기획팀으로 구성

- 산업성장실: 산업유치팀, AI콘텐츠융합팀, 창업성장팀
- 지역경제실: 기업육성팀, 로보파크팀, 상권활성화센터



---

## 2. 인권경영 운영 현황

---

### □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공포

-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 을 제정·공포
-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과 가치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인권경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 공유

### □ 인권경영지침 제정

-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경영지침’ 을 제정
-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

### □ 인권경영위원회 설립

- 진흥원은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
-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인권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진흥원은 인권리스크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2025년 전문 외부기관을 통한 현장실사 방식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분야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 나눔경영 실현

- 진흥원은 인권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

## □ 고객서비스 실천

- 진흥원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위해 ‘고객과의 약속’ 및 ‘고객서비스 현장’ 을 선포

### [ 인권경영 추진현황 ]

분야	상세 내용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헌장 공포</li> <li>• 인권경영헌장 홈페이지 게시</li> <li>•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회의, 구제절차 제정, 인권교육 실시 등</li> </ul>
인권경영 추진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li> <li>•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정책기획팀)</li> </ul>
인권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시스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청렴신고센터 등 감시시스템 구축</li> <li>• 시스템에서 발견된 부정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li> </ul>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실시(2025.12.16.)</li> </ul>
인권침해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시스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청렴신고센터 등 감시시스템 구축</li> <li>•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 조사 확인 및 기관장 보고 조치</li> </ul>
인권경영 확산 및 성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li> <li>• 2025년 인권경영보고서 통합공시 예정</li> </ul>

##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 1. 인권헌장 제정

#### □ 제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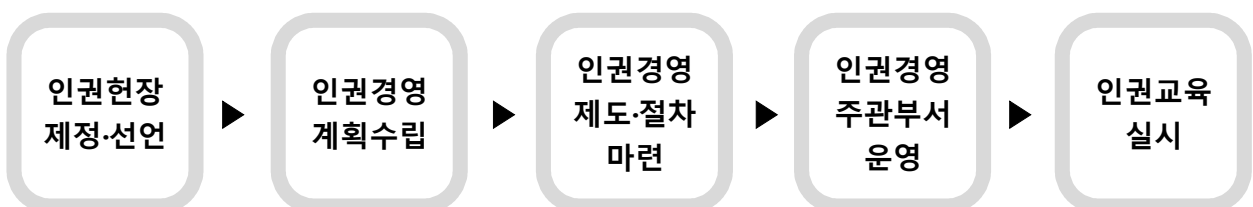
-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

#### □ 적용범위

- 진흥원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름

#### □ 인권헌장 기반 인권경영 프로세스

- 인권헌장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며,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운영
-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계약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 제공




## □ 인권헌장 주요가치

○ 진흥원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요 가치를 인권헌장에 포함

- 1) **(고용상 차별금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벌,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 금지
- 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
- 3)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고,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4) **(산업안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원
- 5) **(책임 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업무계약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6) **(현지주민 인권보호)**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7) **(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
- 8) **(정보인권 보호)** 국민 및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접근권을 보장
- 9) **(구제조치의 노력)**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 □ 진흥원 인권경영헌장



###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헌장

부천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진흥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활동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사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2. 인권경영 거버넌스

### □ 인권경영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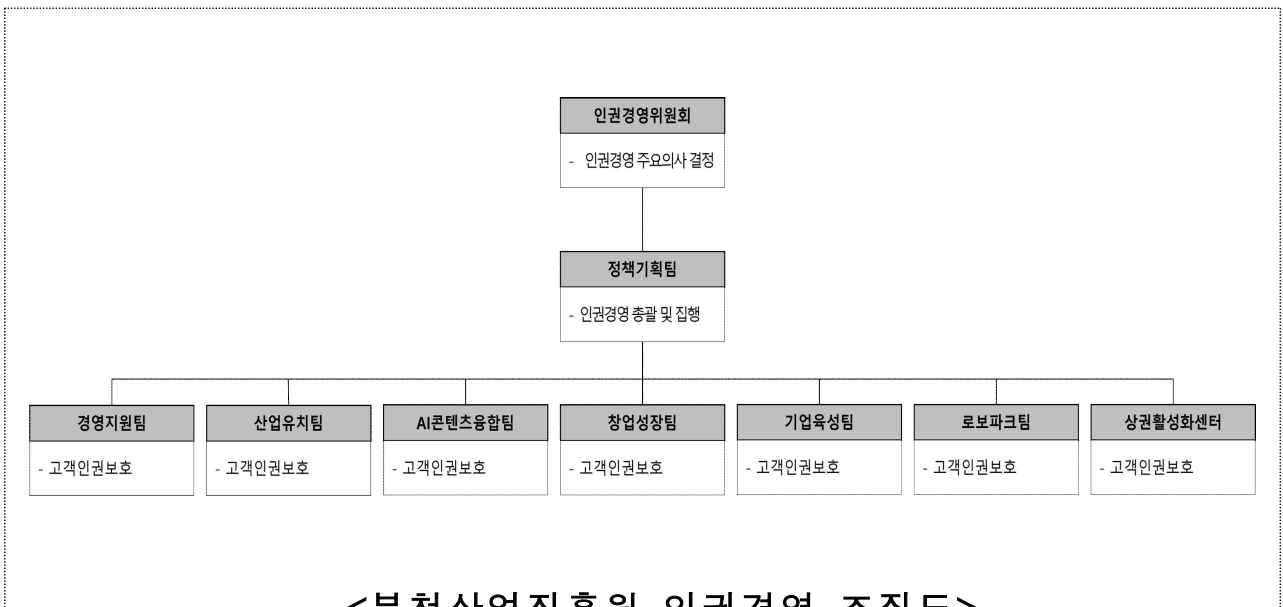
- (기능) 인권경영 추진계획 이행지침 제정 및 구체절차 운영 등 인권경영 제도화 조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구성) 인권경영 전담부서: 정책기획팀(인권경영 총괄 및 집행)

### □ 인권경영위원회

-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구분	구성원
내부위원	• 원장(위원장), 상임이사, 감사팀장,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외부위원	• 인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원장이 임명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인권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간사	• 인권경영 전담부서장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조직도>

### 3. 인권경영 이행계획

#### □ 2025년 인권경영체제 구축

구분	세부추진내용	일정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실무위원회 운영	조직 내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효율적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필요시) 윤리·인권 관련 실무위원회(가칭) 운영	상시 (필요시)
업무절차 제·개정 시 인권침해요소 검토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발생 가능 요인 검토 절차 마련	상시
인권존중 경영문화 성숙도 측정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성숙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성숙도 평가 진행	4분기

#### □ 인권영향평가 실시

구분	세부추진내용	일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정비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 및 정비 안전·보건, 성폭력·성희롱 등 2차 피해 및 갑질 등에 대한 지표 중점 검토	3분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과정 또는 결과에서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와 상이한 2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	3분기

###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분	세부추진내용	일정
인권경영 실천의지 표명	인권경영 실천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홍보물, 홈페이지 등) 각종 사업 및 용역 등과 관련하여 워크숍, 보고회 등 수행 시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	상시
인권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권경영에 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상시

### □ 구제절차의 제공

구분	세부추진내용	일정
주기적인 구제절차 유효성 평가	구제절차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4분기
구제절차의 지속적 개선	평가결과의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제도·절차 개선안 마련	4분기

## Ⅲ 인권영향평가

### 1. 2025년 인권영향평가 개요

#### □ 추진목적

- 진흥원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예방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에 반영
- 절차에 따른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함

#### □ 평가주관

- (내부) 부천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 (외부) (주)한국경영인증원

#### □ 추진일정

- 추진기간: 2025. 9. 17. ~ 2025. 12. 16.
  - 2025. 9. 9.: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
  - 2025. 9. 25.: 착수보고회(온라인)
  - 2025. 10. 20.: 주요사업 평가대상 확정 및 지표개발
  - 2025. 10. 23.: 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온라인)
  - 2025. 11. 17.: 인권영향평가 현장실사(대면)
  - 2025. 12. 10.: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 2025. 12. 16.: 최종보고서 제출

## □ 평가절차

①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② 환경분석 → ③ 지표(체크리스트) 작성 → ④ 지표 검토 및 확정 → ⑤ 인권영향평가 → ⑥ 결과도출 및 내부심의 → ⑦ 인권리스크 방지 및 개선조치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진흥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항목 및 지표수 ]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지표변경현황 (2024년 지표 대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40개	▽ 1개 지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22개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9개	△ 3개 지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4개	△ 3개 지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
6	산업안전보장	4개/17개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개/17개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개/3개	▽ 7개 지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
10	고객인권 보호	3개/15개	▽ 6개 지표
11	직장 내 인권보호	5개/29개	▽ 2개 지표
12	근로환경	4개/25개	-
총계		42개/233개	▽ 10개 지표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추진사업 중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항목 및 지표수 ]

구분	사업명	항목수/지표수
1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4개/15개
2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6개/21개
총계		10개/36개

## 2. 인권영향평가 지표

### □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

- (기관운영)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12개 분야, 42개 항목, 233개 지표를 확정
- (주요사업)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진흥원의 대내외 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 이해관계자, 파급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개 항목, 36개 지표를 확정

### □ 기관운영 세부 평가지표

구분	분야	항목	지표수(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4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9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4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구분	분야	항목	지표수(개)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7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공정거래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고객인권보호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5
		제품 결함 시 조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11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장애인 근로자 보호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모성 보호	
12	근로환경	휴식권 보장	25
		휴가권 보장	
		건강권 보장	
		유연근무	
<b>총계</b>			<b>233</b>

□ 주요사업 세부 평가지표

구분	사업명	항목	지표수(개)
1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정한 선정 및 평가	15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연구개발 윤리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2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공정한 선정 및 평가	21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지원기업 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리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 거래	
		사업 접근성 및 포용성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b>총계</b>			<b>36</b>

### 3.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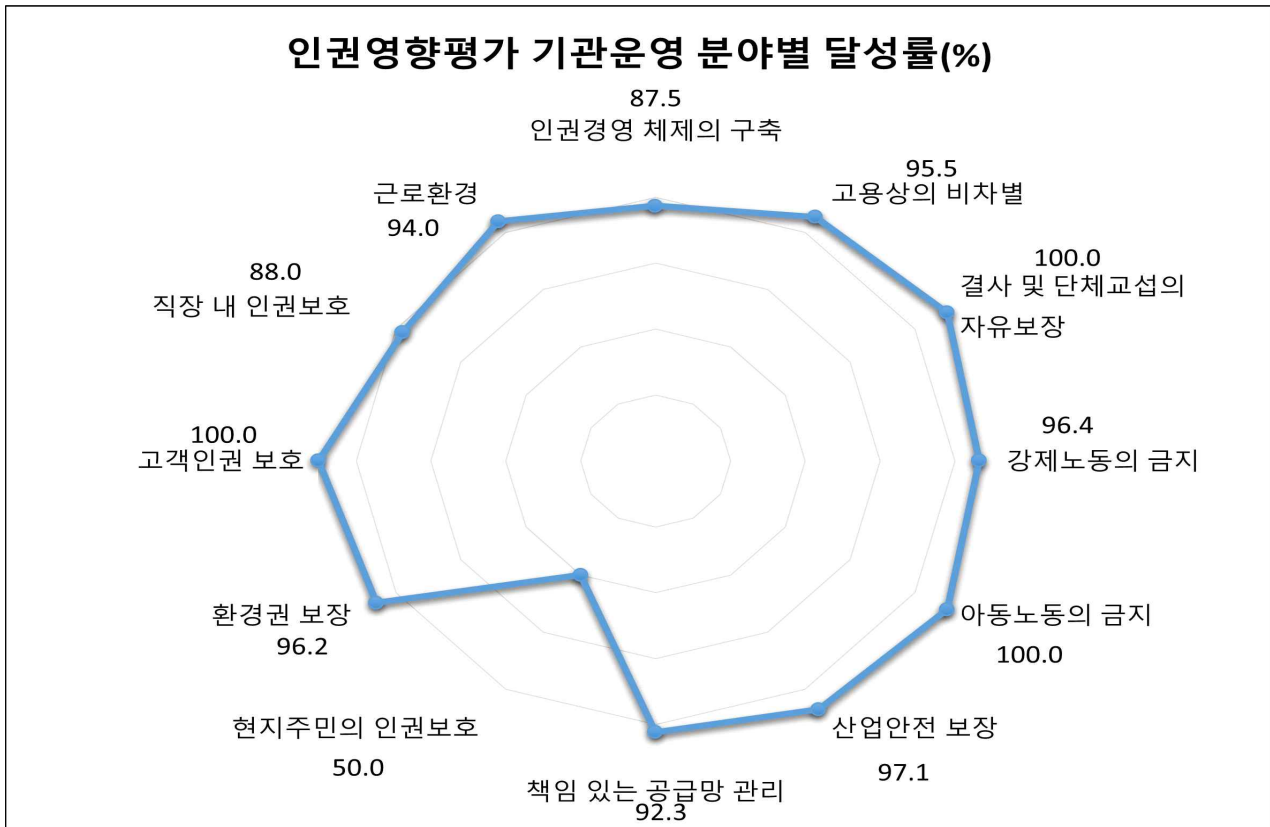
□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경영을 추진
- 모든 임직원이 인권 존중의 책무를 다하는 취지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 2025년 기관운영분야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지표를 기반으로 12개 분야, 42개 항목, 233개 세부항목으로 확정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전년 대비 3.3% 증가한 93.1% 달성률을 기록

- 기관운영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의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근로환경 분야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 ‘보완필요’가 발견된 지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권 관련 규정 개정,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구제절차 보완, 안전관리 및 비상계획 준비, 협력사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 피해자 치료 지원, 휴가 및 유연근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보완 예정
-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는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각각 **93.3%**, **97.6%** 달성률을 기록
-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는 연구개발 윤리, 지원기업 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리 분야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 ‘보완필요’가 발견된 지표는 환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및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완 예정
- 인권영향평가 결과로 도출된 이슈들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시행했으며, 중대성 평가를 통해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확인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 달성률: 93.1%(418점 중 389점 획득)



구분	분야	결과				
		지표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0	80	80	70	87.5%
2	고용상의 비차별	22	44	44	42	95.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9	38	36	36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14	28	28	27	96.4%
5	아동노동의 금지	14	28	8	8	100.0%
6	산업안전 보장	17	34	34	33	97.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7	34	26	24	92.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3	6	6	3	50.0%
9	환경권 보장	18	36	26	25	96.2%
10	고객인권 보호	15	30	30	30	100.0%
11	직장 내 인권보호	29	58	50	44	88.0%
12	근로환경	25	50	50	47	94.0%
<b>총점</b>		<b>233</b>	<b>466</b>	<b>418</b>	<b>389</b>	<b>93.1%</b>

※ 점수 산출식: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

- 총 233개 지표 중 예 181개, 보완필요 27개, 아니요 0개. 정보없음 1개, 해당없음 24개로 평가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근로환경 분야 일부 항목은 주요 개선과제에 반영
- (해당없음) 전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 중 일부 항목은 진흥원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 '보완필요' ) 중심으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예' 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

구분	분 야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10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20	2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8	0	0	0	1
4	강제노동의 금지	13	1	0	0	0
5	아동노동의 금지	4	0	0	0	10
6	산업안전 보장	16	1	0	0	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1	2	0	0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1	0	1	0
9	환경권 보장	12	1	0	0	5
10	고객인권 보호	15	0	0	0	0
11	직장 내 인권보호	19	6	0	0	4
12	근로환경	22	3	0	0	0
<b>총점</b>		<b>181</b>	<b>27</b>	<b>0</b>	<b>1</b>	<b>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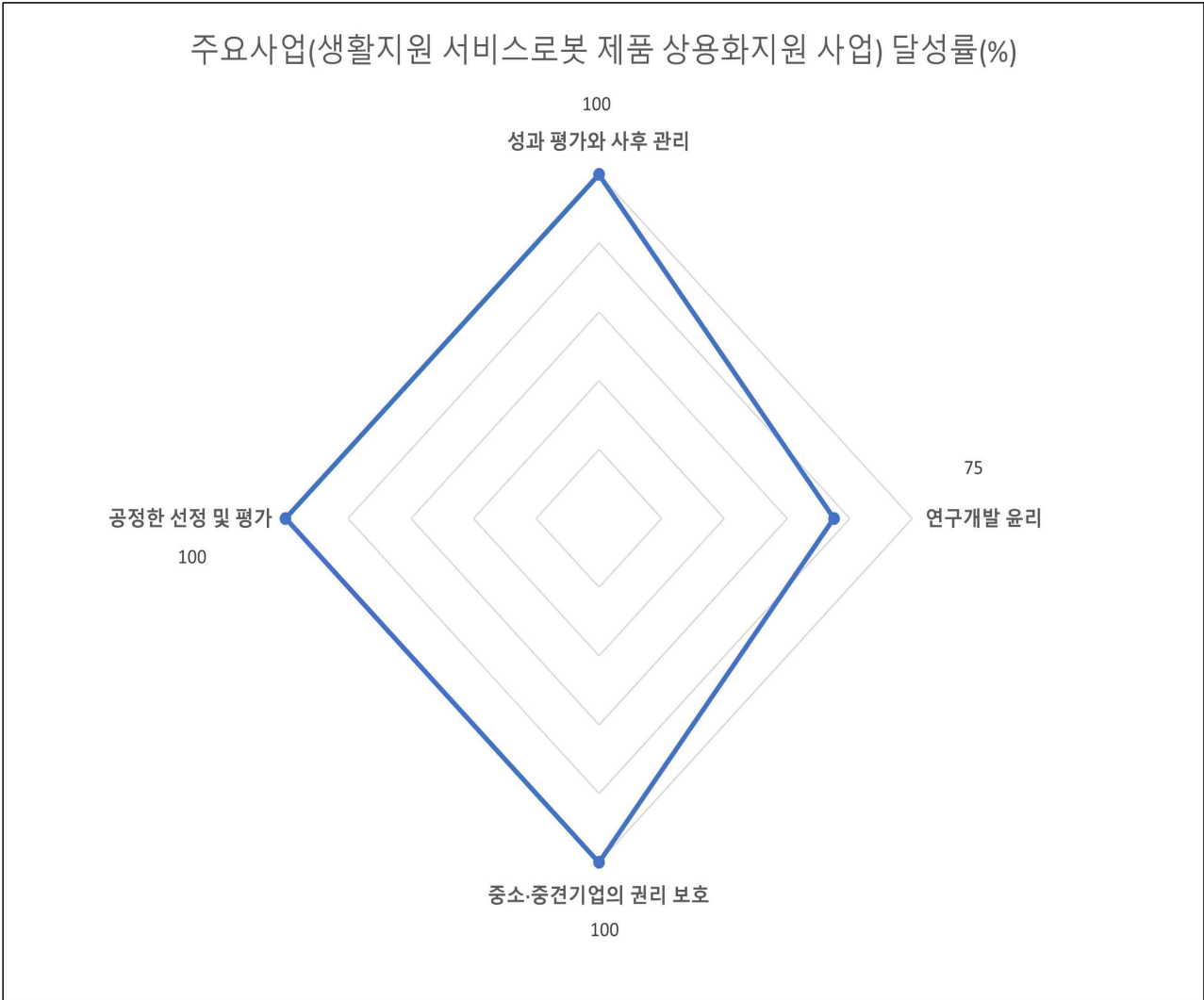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연도별 비교

구분	분 야	달성률		
		2024년	2025년	증감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6.3%	87.5%	▽ 8.8%
2	고용상의 비차별	94.4%	95.5%	△ 1.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100.0%	-
4	강제노동의 금지	100.0%	96.4%	▽ 3.6%
5	아동노동의 금지	100.0%	100.0%	-
6	산업안전 보장	88.2%	97.1%	△ 8.9%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1.5%	92.3%	△ 30.8%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0%	50.0%	▽ 50.0%
9	환경권 보장	71.4%	96.2%	△ 24.8%
10	고객인권 보호	100.0%	100.0%	-
11	직장 내 인권보호	79.6%	88.0%	△ 8.4%
12	근로환경	92.0%	94.0%	△ 2.0%
<b>총계</b>		<b>89.8%</b>	<b>93.1%</b>	<b>△ 3.3%</b>

- 2025년 인권영향평가 달성률은 93.1%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
- 2024년 지표 중에서 ‘아니요’ 또는 ‘보완필요’ 로 평가된 일부 지표가 ‘예’, ‘보완필요’ 로 평가
- 2024년 인권영향평가 당시 일부 달성률이 낮은 지표 중 ‘책임 있는 공급망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달성률이 증가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의 금지’, ‘고객인권보호’ 분야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100%로 평가
- 2025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보완필요’ 로 평가되어 권고의견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행계획 수립으로 개선 예정

##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 달성률: 93.3%(30점 중 28점 획득)



구분	항 목	결과				
		지표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공정한 선정 및 평가	5	10	10	10	100.0%
2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3	6	6	6	100.0%
3	연구개발 윤리	4	8	8	6	75.0%
4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3	6	6	6	100.0%
총점		15	30	30	28	93.3%

※ 점수 산출식: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주요사업 점검 집계 결과

- 총 16개 지표 중 예 14개, 보완필요 2개로 평가

구분	항 목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정한 선정 및 평가	3	0	0	0	0
2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3	0	0	0	0
3	연구개발 윤리	3	2	0	0	0
4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5	0	0	0	0
<b>총점</b>		<b>14</b>	<b>2</b>	<b>0</b>	<b>0</b>	<b>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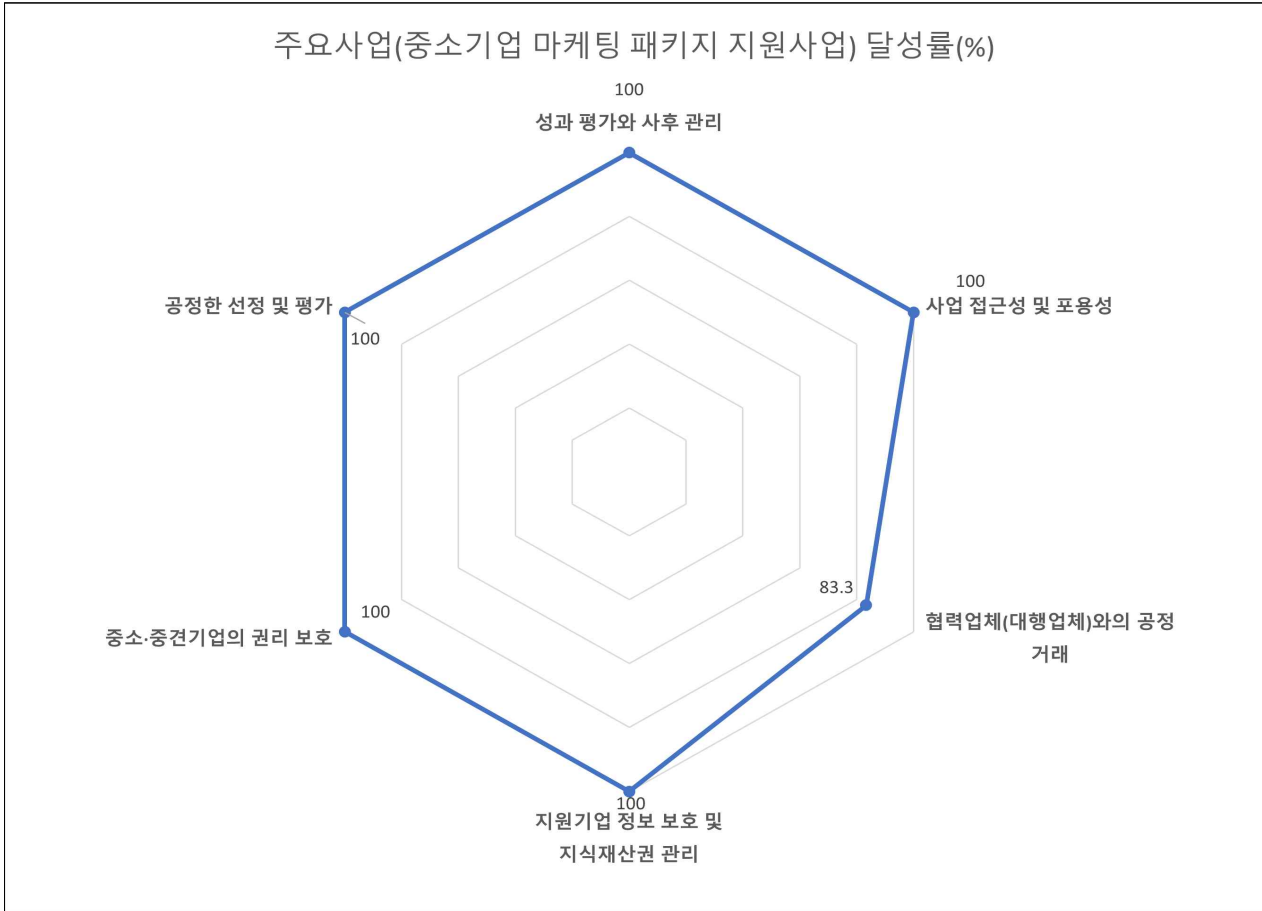
○ 주요사업 평가 결과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5대 핵심부품 과제 우선 선정 기준이 특정 기술 분야를 차별하지 않고 ‘사업성·시장성’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시 교수, 연구소장, 센터장, 특허법률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중을 방지
- 중소·중견기업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술성·시장성’ 중심 평가를 통해 영세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품화와 시제품 지원 간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설정(제품화 최대 4,500만원, 시제품 최대 1,000만원)
- 탈락 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내로 재도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협약서를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표준 협약서 기반으로 기술료 미징수, 과제별 자율적 개발 일정 허용, 성과 독점이나 과도한 의무 등 불리한 조항 배제
- 협약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기준을 안내하여 기업 권리 보호 체계 구축
- 협약서를 통해 정보 수집 범위와 거부권을 명시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 제공 거부권을 보장

- 매출액, 고용 창출, 지식재산권, 인증 및 포상 등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참여 결과 평가를 통해 상세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지나친 제재를 방지
-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운용, ESG 공헌도(5%) 평가 반영을 통한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고려,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개발 과제 선정, 참여기업 대상 세미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등 연구개발 윤리를 고려
-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적 우대 중심 운영을 보완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권 보장하도록 「환경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업이 자가 점검하고, 이를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 필요
- 로봇 기술의 일자리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ESG 공헌도 평가 항목 내에 ‘일자리 영향 고려’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개선 필요

## □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종합 달성률: 97.6%(42점 중 41점 획득)



구분	항 목	결과				
		지표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공정한 선정 및 평가	7	14	14	14	100.0%
2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4	8	8	8	100.0%
3	지원기업 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리	2	4	4	4	100.0%
4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 거래	3	6	6	5	83.3%
5	사업 접근성 및 포용성	2	4	4	4	100.0%
6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3	6	6	6	100.0%
<b>총점</b>		<b>21</b>	<b>42</b>	<b>42</b>	<b>41</b>	<b>97.6</b>

※ 점수 산출식: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주요사업 점검 집계 결과

구분	항 목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공정한 선정 및 평가	3	0	0	0	0
2	중소·중견기업의 권리 보호	2	0	0	0	0
3	지원기업 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리	2	1	0	0	0
4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 거래	2	0	0	0	0
5	사업 접근성 및 포용성	4	0	0	0	0
6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7	0	0	0	0
<b>총점</b>		<b>20</b>	<b>1</b>	<b>0</b>	<b>0</b>	<b>0</b>

○ 주요사업 평가 결과

-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은 분야 선정 시 업종 제한 없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 1차 정량평가에서 영세기업이 업력, 고용 규모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역량평가에서 중견기업이 강점을 보이도록 평가 간 균형 고려
- 복수분야(최대 2개) 선택 제도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탈락 기업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 피드백 제공 및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
-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외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정보 유출 방지
- 공고문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불리한 조건 강요 구조가 없으며, 마케팅 결과물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공고문에도 고지
- 대행업체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며 정산 시 견적서를 검토하여 부당계약을 방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사업운영 이외에는 미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사업 운영 이외에는 미사용
- 기업의 매출 등 민감정보는 외부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 통계 및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정보 활용 목적을 공고문에 고지
-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며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취약기업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온라인 시스템 외에 공고문 내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명시하여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 문의·상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
- 성과 평가 시 매출 증가율 외에도 홍보 효과, 브랜드 인지도, 온라인 유입량, 클릭 수 등 다양한 정성·정량 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차년도 참여 제한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재참여 여부를 고지
- 성과 자료 수집 시 영업비밀 및 민감정보는 제외하며 자료 제출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 활용 목적과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
- 견적서를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업 종료 시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진행
-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업 범위, 비용, 납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진흥원이 검토 진행
- 계약 체결 시 견적서만으로는 작업 범위, 비용, 납기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수립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공정 계약을 사전 예방하도록 개선 필요

## 4. 인권영향평가 권고의견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의견

분야/항목	권고의견
<b>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b>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경영헌장에 기관장 성함, 서명, 날짜를 명시하여 정책선언의 공식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인권경영지침에 인권경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조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입할 것을 권고함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지침에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직전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 여부를 표 등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해 인권영향평가 또는 인권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함
1.3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인권경영지침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경영진(원장, 상임이사, 실장, 팀장) 대상 별도의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1.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보고서에 전년 대비 개선사항,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표나 그래프 형식으로 포함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1.5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지침에 구제절차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결과 제공 시한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조항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함
	별도의 구제절차 매뉴얼 또는 이행가이드를 개발하여 홈페이지 인권침해센터 페이지에 구제절차 프로세스, 신고 유형, 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상세히 게시할 것을 권고함

분야/항목	권고의견
1.5 구제절차 마련	조직문화 설문조사에 구제절차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구제절차 인지도, 이용 의향, 이용 경로, 미이용 사유,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절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b>2. 고용상의 비차별</b>	
2.1 고용상 비차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직원 배치를 위한 배치기준(고충처리 절차 포함)을 사전에 마련하여 공지하는 것을 권고함
2.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예비 관리자 교육을 계획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를 권고함
<b>4. 강제노동의 금지</b>	
4.2 협력사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권고함
<b>6. 산업안전 보장</b>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장비실, 외부 관람객 이동통로, 입주기업 이용 시설 등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를 외부 안전관리 위탁 업체와 협업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함
<b>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b>	
7.2 모니터링 실시	계약 협력사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 관련 법령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계의 단절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b>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b>	
8.1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진흥원과 용역사가 제작·배포하는 모든 편찬물 및 홍보물에 대해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사업 공고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b>9. 환경권 보장</b>	
9.4 비상계획 수립	재난사고 대응 행동 매뉴얼에 로보파크 관람객 및 그라운드21 입주기업의 대피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분야/항목	권고의견
<b>11. 직장 내 인권보호</b>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감정노동 피해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문과 면담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권고함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및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신적 피해의 치료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도입을 권고함
11.4 감정 근로자 보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무 및 직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고객응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활용을 권고함
<b>12. 근로환경</b>	
12.2 휴가권 보장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외, 휴가 중인 임직원에게 연락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12.4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및 진흥원의 일과 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어느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권고함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의견

분야/항목	권고의견
<b>주요사업 1.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b>	
1.3 연구개발 윤리	환경보호를 위해 간단한 「환경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 시 기업이 자가 점검하도록 권고함
	ESG 공헌도 평가 항목 내에 '일자리 영향 고려' 세부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b>주요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b>	
2.4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 거래	「표준계약서」 및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참여기업에 배포할 것을 권고함

## 5. 중대성 평가

### □ 중대성 평가 개요

- 식별된 인권 이슈를 분석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 심각성(Severity)은 피해자의 권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모, 범위, 회복가능성을 고려
    - ※ (규모) 리스크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 확인하는 단계
    - ※ (범위)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인원수
    - ※ (회복가능성) 리스크가 노출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
  -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

#### [ 중대성 평가 방법 ]

요소		척도	판단기준	
심각성	규모 (정도)	3	상	인권침해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행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수반함.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특히 취약함
		2	중	인권침해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대해 중간 정도의 영향을 수반함
		1	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생활에 대한 장기적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수반하지 않고,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범위	3	상	영향받는 사람이 다수로 직원, 가족, 인근 주민까지 포함됨
		2	중	영향받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인원수임
		1	하	영향을 받는 인원이 소수임
	회복 가능성	3	상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영향을 시정할 수 없음
		2	중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영향을 시정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
		1	하	인권침해를 완전히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음

요소	척도	판단기준	
발생가능성	3	상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매년 수차례 발생하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중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해당 업계에서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음
	1	하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해당 업계에서 과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은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기관 내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주요 이슈는 총점 10점 이상으로 선정(최종 중대성 평가 수준은 현장평가단에서 최종 결정)

[ 중대성 평가 수준 ]

심각성			+	발생 가능성	=	총점	수준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3	3	3		3		12	상
2	2	2		2		11	
1	1	1		1		10	
						9	중
						8	
						7	
						6	하
						5	
						4	

-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에 따른 항목별 점수와 종합점수는 최종결과가 아닌 참고사항이며, 점수 산출이 주요 인권 이슈 도출에 방해로 작용하지 않음

## □ 중대성 평가 결과

- 중대성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의거한 절차로서 식별된 여러 인권 이슈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주요 인권 이슈’ 를 선정
- 기관이 인권 이슈를 일거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및 침해행위 발생 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이슈의 우선순위를 산출
- 인권영향평가 도출 결과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과 기관운영에서는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성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로, 주요사업에서는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중 ‘연구개발 윤리’ 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총 6개의 주요 인권 이슈 확인
-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추진 필요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중대성 평가결과 ]

분야/항목	권고의견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b>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b>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경영헌장에 기관장 성함, 서명, 날짜를 명시하여 정책선언의 공식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2	2	3	3	10
	인권경영지침에 인권경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정기적 재검토 조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입할 것을 권고함	2	2	2	2	8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지침에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3	3	3	2	11

2025년 부천산업진흥원 인권경영보고서

분야/항목	권고의견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직전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 여부를 표 등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해 인권영향평가 또는 인권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함	3	2	2	2	9
1.3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인권경영지침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2	2	3	2	9
	경영진(원장, 상임이사, 실장, 팀장) 대상 별도의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1	2	2	7
1.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보고서에 전년 대비 개선사항,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표나 그래프 형식으로 포함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2	3	3	2	10
1.5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지침에 구제절차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결과 제공 시한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조항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1	2	2	7
	별도의 구제절차 매뉴얼 또는 이행가이드를 개발하여 홈페이지 인권침해센터 페이지에 구제절차 프로세스, 신고 유형, 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상세히 게시할 것을 권고함	2	3	2	2	9
	조직문화 설문조사에 구제절차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구제절차 인지도, 이용 의향, 이용 경로, 미이용 사유,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절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2	2	3	2	9
<b>2. 고용상의 비차별</b>						
2.1 고용상 비차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직원 배치를 위한 배치기준(고충처리 절차 포함)을 사전에 마련하여 공지하는 것을 권고함	2	2	3	2	9
2.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예비 관리자 교육을 계획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를 권고함	2	2	2	2	8

분야/항목	권고의견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b>4. 강제노동의 금지</b>						
4.2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권고함	2	2	2	2	8
<b>6. 산업안전 보장</b>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장비실, 외부 관람객 이동통로, 입주기업 이용 시설 등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를 외부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협업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2	2	2	9
<b>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b>						
7.2 모니터링 실시	계약 협력사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 관련 법령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계의 단절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2	2	2	2	8
<b>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b>						
8.1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진흥원과 용역사가 제작·배포하는 모든 편찬물 및 홍보물에 대해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사업 공고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내용을 포함 할 것을 권고함	1	2	2	2	7
<b>9. 환경권 보장</b>						
9.4 비상계획 수립	재난사고 대응 행동 매뉴얼에 로보파크 관람객 및 그라운드21 입주기업의 대피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3	2	2	2	9
<b>11. 직장 내 인권보호</b>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감정노동 피해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문과 면담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권고함	3	2	3	3	11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및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신적 피해의 치료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을 권고함	3	2	3	3	11
11.4 감정 근로자 보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무 및 직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고객응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활용을 권고함	2	2	3	2	9

분야/항목	권고의견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b>12. 근로환경</b>						
12.2 휴가권 보장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외, 휴가 중인 임직원에게 연락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2	2	2	1	7
12.4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및 진흥원의 일과 생활 균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어느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권고함	2	2	2	1	7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중대성 평가결과 ]

분야/항목	권고의견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		
<b>주요사업 1.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b>						
1.3 연구개발 윤리	환경보호를 위해 간단한 「환경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업이 자가 점검하도록 권고함	3	3	2	2	10
	ESG 공헌도 평가 항목 내에 '일자리 영향 고려' 세부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2	2	2	8
<b>주요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b>						
2.4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 거래	「표준계약서」 및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참여기업에 배포할 것을 권고함	2	3	2	2	9

## IV 구제절차

### 1. 구제절차 개요

#### □ 인권경영 관련 규정

- 진흥원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와 신분을 보호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경영 관련 규정에 반영

#### [ 인권경영 관련 규정 ]

관련규정 (제·개정일)	주요내용
인권경영헌장 (2020. 9. 25. 제정)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판단 및 행동규범의 기준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의지 다짐 및 대내·외 공표를 목적으로 함
인권경영지침 (2020. 4. 6. 제정)	진흥원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2018. 4. 25. 제정) (2025. 7. 21. 4차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원장이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규정 (2019. 8. 30. 제정) (2023. 9. 20. 3차 개정)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행위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 진흥원의 임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인권침해 신고 채널

- 진흥원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이슈 및 인권 관련 고충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운영

### [ 인권침해 신고 채널 ]

신고채널	고충상담	신고범위	신고접수
갑질행위· 부당행위 신고	정책기획팀 ☎ 032-716-6753 (감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언, 폭행 등 갑질</li> <li>• 부당한 압력 행사</li> <li>•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게시판</li> <li>• 탕비실 내 신고함</li> <li>• 홈페이지 신고시스템 (외부이해관계자)</li> </ul>
인권침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강제노동</li> <li>• 휴식권, 환경권 침해</li> <li>• 그 외 각종 인권침해 행위</li> </ul>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경영지원팀 ☎ 032-716-6412 (고충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폭언, 협박, 명예훼손</li> <li>•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li> <li>•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li> </ul>	
성희롱· 성폭력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li> <li>•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li> </ul>	

## 2.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운영 현황

### □ 구제절차

○ 인권에 관한 침해 및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함

신고절차	주요내용	담당부서
신고→접수 (정책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 전화, 그룹웨어, 이메일 및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li> </ul>	정책기획팀 (감사담당)
상담 및 사건조사 ▼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 여부 확인</li> </ul>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행위 판단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li> </ul>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정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진행</li> <li>30일 이내 완료(최대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li> </ul>	
보강조사(필요시) ▼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위원 1/2 이상 포함 조사소위원회 구성</li> <li>7일 이내 진술서 등 자료 제출 완료</li> </ul>	
결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정사항 당사자 통보</li> <li>인권침해 행위가 중대할 시 국가인권위원회 이관</li> </ul>	
시정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자 징계 등 인권침해행위 시정 및 조치</li> </ul>	

### □ 최근 3년간 구제절차 운영 현황

○ 2025년 인권침해 사건 미발생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고건수	0	0	1
인정건수	0	0	0

## V 인권경영 교육

### 1. 2025년 인권교육 개요

#### □ 추진목적

- 진흥원은 공직가치 및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해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포함한 기본역량교육(법정의무교육 및 정부권장교육)을 시행
-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사전 예방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 방지

#### □ 법정의무교육 운영

교육명	교육대상	세부내용	최소 이수시간
부패방지 교육	고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갑질금지),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 환수법</li> <li>• 신규임용자, 승진자,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실시 ※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 3개월 이내 실시(10월 이후 임용자 제외)</li> </ul>	4시간
	승진자		
	신규자		
	근로자		
4대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각 1시간 이수(총 4시간)</li> <li>• 2차 피해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신종 범죄 포함</li> <li>• 신규직원 2개월 이내, 전 직원 1회 이상 대면 교육 진행</li> <li>• 신규 고충상담원 지정 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수강 ※ 고위공직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집합교육 必</li> </ul>	4시간
	신규자		
	근로자		

교육명	교육대상	세부내용	최소 이수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 종사자이면서 신고 의무자일 경우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지정 강의 총 2시간 이수</li> <li>사이버 원격교육(경기도 지식,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인정</li> <li>근무 직원은 모두 대상으로 함(일반직,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li> </ul>	2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 상임이사, 계약직 및 월 60시간 이상·16일 이상 근로자 포함</li> <li>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법상 인식개선 내용 포함</li> <li>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 제작한 통합인식개선교육 수강</li> </ul>	1시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취급자 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li> </ul>	1시간
산업안전 보건교육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반기별 6시간 이상 수료 (매월 혹은 분기별 분리 실시 가능)</li> <li>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li> </ul>	6시간
	관리자		16시간
	근로자		12시간
	신규자		8시간

□ 정부권장교육 운영

교육명	세부 내용	교육시기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의식에 대한 이해와 향상 및 인권 감수성 함양</li> </ul>	연중
ESG경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천 교육</li> </ul>	연중
가족친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친화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교육</li> </ul>	필요시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 공헌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li> </ul>	필요시

## 2. 2025년 인권교육 실적

### □ 임직원의 인권 및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실적

○ 총 40개 과정, 751명 이수

구분	교육명	교육기관	이수인원
인권 경영교육	[행복의 공식]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경기도인재개발원, GSEEK	51
	영화로 배우는 인권감수성 교육	부천시	3
ESG경영 교육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ESG 전략	경기도인재개발원, GSEEK	50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미라클 ESG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
	제2기 ESG선도대학 과정	경기대학교	1
	핵심만 콕! RE100과 지속 가능한 미래구축	GSEEK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2곳	50
부패 방지 교육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연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44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연수원 외 2곳	47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렴연수원 외 2곳	44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GSEEK	49
	[청렴]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경기도인재개발원	1
	[내일을 잇는 클래스] 청탁금지법	GSEEK	1
	[내일을 잇는 클래스]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교육	GSEEK	4
	[오피스백서]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교육	휴넷 기업교육	10
	청탁금지법	GSEEK	1
	2025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1
	2025년 청렴페스타(FESTA)	부천시	23
	2025년 부패방지 종합교육	진흥원 자체실시	35
	2025년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진흥원 자체실시	19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고위직 대상 부패방지교육	진흥원 자체실시	10

V. 인권경영 교육

구분	교육명	교육기관	이수인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2025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_무재해	휴넷 기업교육	42
	2025년 안전보건교육 하반기_무재해	휴넷 기업교육	44
	신규 채용 시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안전교육협회	12
	관리감독자 교육(온라인)	휴넷 기업교육	6
	관리감독자 교육(대면)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4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GSEEK	50
장애인식 개선교육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GSEEK	51
폭력 예방 교육	우리 곁에 폭력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6
	모두의약속 폭력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열혈 변호사 신주영의 법정탐구_4대폭력 예방교육	GSEEK	1
	[공감통해결Talk_오피스탐정단] 4대폭력 예방교육	GSEEK	2
	[전문과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4대폭력 예방교육	GSEEK	1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2차 피해 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집체)	진흥원 자체실시	31
신규자	신규 임용자 교육	진흥원 자체실시	7

## VI 종합평가와 공개 및 소통

### 1. 종합평가

#### □ 2025년 인권경영 추진 성과

##### ○ 인권영향평가 내실화

- 기관운영 12개 분야 233개 지표, 주요사업 2개 사업 36개 지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외부 전문기관(한국경영인증원) 현장실사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
- 이해관계자 인터뷰(여성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
- 전년 대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달성률은 3.3% 상승(89.8% → 93.1%)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93.3%(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97.6%(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달성률 기록

##### ○ 구제절차 운영 및 접근성 제고

- 다층적 신고채널(갑질·부당행위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 등) 및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시스템(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을 구축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 접근 경로 다양화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

##### ○ 인권경영 교육 추진 및 인권 인식 확산

- 법정 의무교육 및 정부권장교육을 연계·운영하여 인권 인식 제고 기반 마련

## □ 주요 인권경영 개선과제(기관운영)

### ○ 인권경영 체제 강화

- 인권경영현장에 임직원 일동 대신 기관장 서명과 날짜 명시로 정책선언의 공식성 강화
- 인권경영지침에 인권영향평가 정기 실시(연 1회),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과반 구성, 구제절차 결과 통보 기한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경영진(원장, 상임이사, 실장, 팀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인권경영 제도 운영 내실화

-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체계적 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다음 해 인권영향평가 또는 인권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과제별 조치계획, 이행여부 표 형식 관리)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감정노동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의 제도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피해자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체계 마련
- 구제절차 매뉴얼 개발 및 홈페이지 상세 게시를 통해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하고 구제절차 인지도, 이용 의향,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구제절차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

### ○ 근로환경 개선

- 업무시간 외 또는 휴가 중 연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유연근무제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로 실질적 일·생활 균형 지원
-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예비 관리자 교육 계획 및 시행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직원 배치 기준(고충처리 절차 포함) 마련 및 사전 공지

## □ 주요 인권경영 개선과제(주요사업)

###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환경 유해 물질 최소화를 위해 환경 체크리스트 개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업이 자가 점검하도록 하며,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운영
- 로봇 기술의 일자리 영향과 관련하여 ESG 공헌도 평가 항목 내 일자리 영향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

### ○ 중소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불공정 계약 사전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 명확화 등 협력업체(대행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

## 2. 공개 및 소통

---

### □ 인권경영 보고 채널

- 인권경영 성과 목표 및 성과 결과 보고
- ESG보고서 내 인권경영 추진활동 및 성과 게재
-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 인권경영보고
- 진흥원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추진활동 및 성과보고

### □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유

- 성과공개에 따른 별다른 의견 청취사항 없음